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자 포함 〉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39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자 포함 ..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 학교 교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처분에 대한 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있고, 당사자 역시 그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위원 자격을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교원노동조합은 추천 주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혀 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노동조합 추천자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포함하여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힘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설></u>	<u>5의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u>
6. (생략)	6.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함)」 제7조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¹⁾ 제8조제1항에서 위원 자격을 규정함.²⁾

- 위원 자격 중 교원과 관련된 자격에는, (제2호)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제5호)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6호)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가 포함됨.

□ 개정안은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포함하여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 폭을 넓힘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

1) 「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원지위법」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2.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화하고자 함.

-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 제2장 교육당사자 중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으로³⁾ 「교원지위법」 등에 따라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 교육감과 교섭하는 역할을 함.
- 교원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 제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것으로 같은 법에 따라 교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과 교섭하는 역할을 함.
- 이와 같이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고 설립절차 및 가입 대상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교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교육부 장관 등과 교섭하는 공통점이 있음.

3) 「교육기본법」(법률 제5437호, 1997.12.13. 제정, 1998.3.1. 시행) 전에는, 「교육법」 제80조에 ‘교육회’로 규정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비교]

구분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설립근거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교원노조법」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설립절차	· 별도 규정 없음 * 단 기존 근거법령에 따르면, 교원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인가를 얻어 설립 (구 「교육법」 제80조(교육회)제2항, 구 「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2)	· 「교원노조법」 제4조(노동조합의 설립)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 제출 - (유·초·중등교원) 시·도 또는 전국 단위 - (고등교원) 개별학교, 시·도 또는 전국 단위
가입 대상	·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 교원 (별도 제한 없음)	· 「교원노조법」 제4조의2(가입 범위),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 교원 또는 교원으로 근무하였던 자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제외)
교섭 등 대상	· 「교원지위법」 제12조(교섭·협의 사항) -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교섭 등 당사자	· 「교원지위법」 제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를 위한 규정」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 중앙 단위: 교육부 장관 - 시·도 단위: 교육감	· 「교원노조법」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유·초·중등교원) 시·도 또는 전국 단위 : 교육부장관, 교육감,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 (고등교원) 개별학교, 시·도 또는 전국 단위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국·공립학교의 장,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자료: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교원의 징계처분,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교원단체에 더하여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할 경우, 교원의 입장에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고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이 보다 다양하게 추천될 것으로 보임.

□ 다만 2024년 12월 기준으로 교원노동조합 조직은 138개 교원노동조합에 18만 3,207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⁴⁾ 다수의 노동조합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고용노동부, 「교원노동조합 조직 현황(2024.12.31. 기준)」

□ 참고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추천·지명된 사람 등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되는데, 여기에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단체)'이 추천하는 2명이 포함되어, 교원단체, 교원노동조합 모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 간 자율적 합의로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u>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u> 하며, 위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교원으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교육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3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교육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교육·문화·언론·고용·산업·복지·과학기술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단체나 기관(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으로서 교육발전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3. 교육부장관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2명 6.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하는 1명 7.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1명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교원 관련 단체 등) ①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국 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 단체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 순서로 각 1명씩 추천자를 정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교원 관련 단체의 회원 수 또는 조합원 수와 관련하여 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아울러, 2026년 1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1인 중 5인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에 해당하여,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3항을 준수하고 있으나,⁵⁾

교원단체 추천 위원(1인)과 개정안에 따른 교원노동조합 추천 인원(1인)이 모두 추천되는 경우, 교원의 입장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한편,

(제4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포함되지 않고, 교원 관련 위원 중에서도 (제6호)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는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아,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교원지위법」은 2019년 교원소청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시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자격에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를 추가하도록 개정됨(법률 제16676호, 2019.12.3. 개정, 2020.6.4. 시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구성 현황]

(단위: 명)

위원 자격	현원 수	비고
• (제1호)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 (제2호) 교육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4 (5)*	* 위원장도 교육경력 보유
• (제3호)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거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	3	위원장 1인 포함
• (제4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0	
• (제5호)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	
• (제6호)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0	
합계	11	

주: 1. 2026. 1. 기준

2.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구성)제2항에서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을 (제3호)로 분류하였으나, 위원장이 (제2호) 교육경력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제2호) 인원은 5명임

자료: 「교원지위법」, 「교원노조법」,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위원 추천권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갈등 조성이 우려되고, 복수의 교원노조가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라 일부수정 의견임.
-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 및 전국단위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교원노조가 연합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가 추천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위원을 추천할 때 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추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단체가 추천자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여 규정함.

개정안	수정안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u>5의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u>	제8조(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u>5의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전국단위로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해당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u> 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신중검토**

-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교원, 법률전문가, 행정전문가, 사학관계자, 교원단체 추천자, 법률학 담당 교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와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원 위원을 임명하여 교원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음.
※ 2025.11. 기준 비상임위원의 40%가 교원(초등교원 1인, 중등교원 1인, 대학교원 2인)
- 우리 위원회와 성격이 유사한 소청심사위원회는 법률 및 행정전문가로만 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소청심사위원이 될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편향적 심의로 비취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진주보건대학교: 신중검토**

- 개정안에 따를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 연관된 단체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며, 이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문 의 처

02)6788-5192